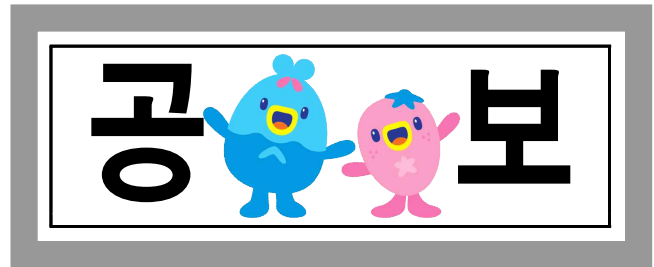
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 람	기 관 의 장



제1527호 2024년 4월 19일(금)

규 칙

- 속초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2

공 고

-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3
- 건축허가(신고)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(변경) 공고 5

입법예고

- 속초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
- 속초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1

발행 : 시 민 소 통 담 당 관 (전화 : 639-3750, FAX : 639-2799)

속초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4년 4월 19일

속 초 시 장

인

속초시 규칙 제1563호

속초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

속초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”을 “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”으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

「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22조제3항에 따라 철거·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할 예정임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나,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의 주소 불명, 사망의 사유 등으로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4. 4. 16.

속 초 시 장

1. 공고기간 : 2024. 4. 16. ~ 2024. 5. 1. (15일간)
2. 공고장소 : 속초시 홈페이지, 게시판,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
3. 공시송달 내용

처분의 제목	당사자		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
	성 명	주 소		위 치	건축물현황
건축물대장 직권말소	김남○	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567-1번지	건축물 부존재	동명동 567-1	시멘트블럭조 / 주택 18.76㎡

4. 유의 사항

-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으로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리니,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속초시 건축과(☎033-639-151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인	성명	
	주소	전화번호

의견제출 내용	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	
	당사자	성명(명칭)
		주소
		(전화번호:)
	의견	
기타		

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,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의견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귀하

유의사항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건축허가(신고)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(변경) 공고

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(신고)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.

2024년 4월 19일

속 초 시 장

가. 공 고 명: 건축허가(신고)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(변경) 공고

나. 도로위치: 속초시 도문동 1493-3번지, 1493-16번지, 1493-22번지, 1493-23번지, 1493-24번지, 1495-1번지, 1495-4번지

다. 공고방법: 속초시공보,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

라. 공고기간: 2024. 4. 19. ~ 2024. 5. 3. (14일간)

마. 도로 지정 조서

소재 지	지번	지 목	변경전		변경후		소유자	건축위치 건축물 용도 건축허가번호 (허가 통보일)	비고
			면적(㎡)		면적(㎡)				
			공부 면적	지정 면적	공부 면적	지정 면적			
강원도 속초시 도문동	1493-3	임	7,818	1,156	1,156	969	(주)이스○	도문동 1493-4번지 외 1필지 단독주택 2022-건축과-신축허가-39 (2022. 6. 30.)	건축주: (주)이스○
	1493-16	임	-	-	450	15			
	1493-22	임	-	-	2,087	119			
	1493-23	임	-	-	2,479	384			
	1493-24	임	-	-	557	382			
	1495-1	전	-	-	69	14	장민○		
	1495-4	임	-	-	87	38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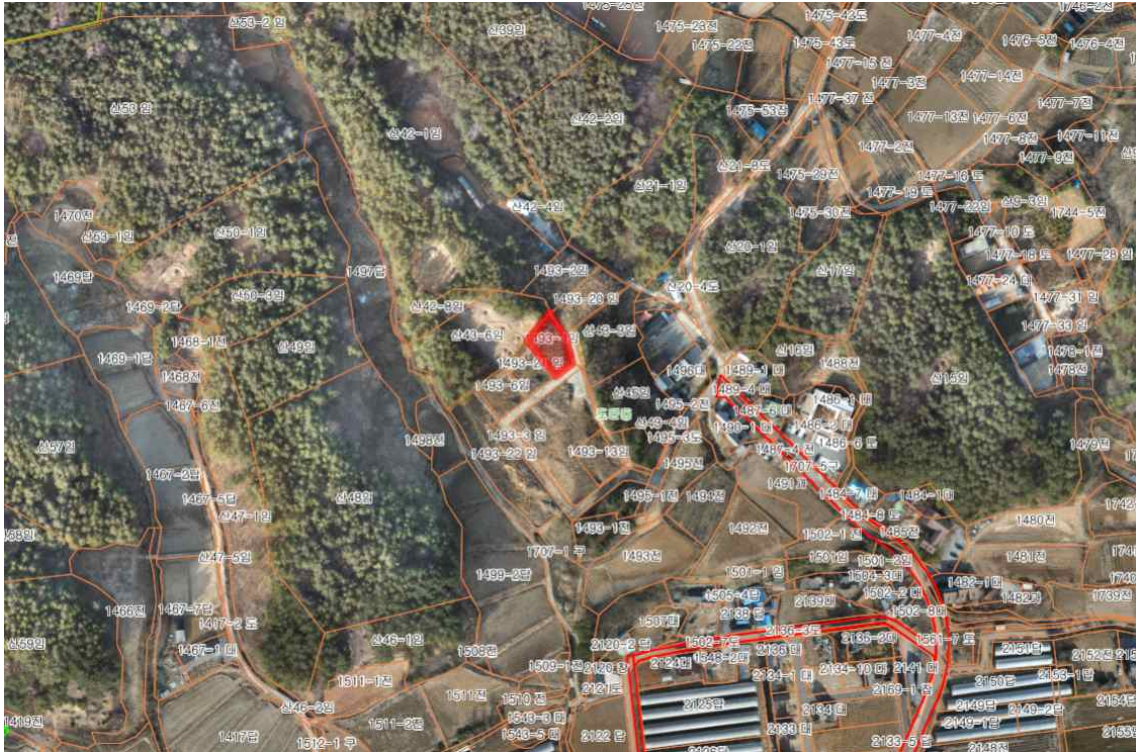
바. 공고방법: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

사. 관계도서: 속초시청 건축과 비치(열람가능)

아. 문의사항: 건축과 건축허가팀(033-639-2769)

위치도 및 현황도
 (도문동 1493-3번지, 1493-16번지, 1493-22번지, 1493-23번지, 1493-24번지,
 1495-1번지, 1495-4번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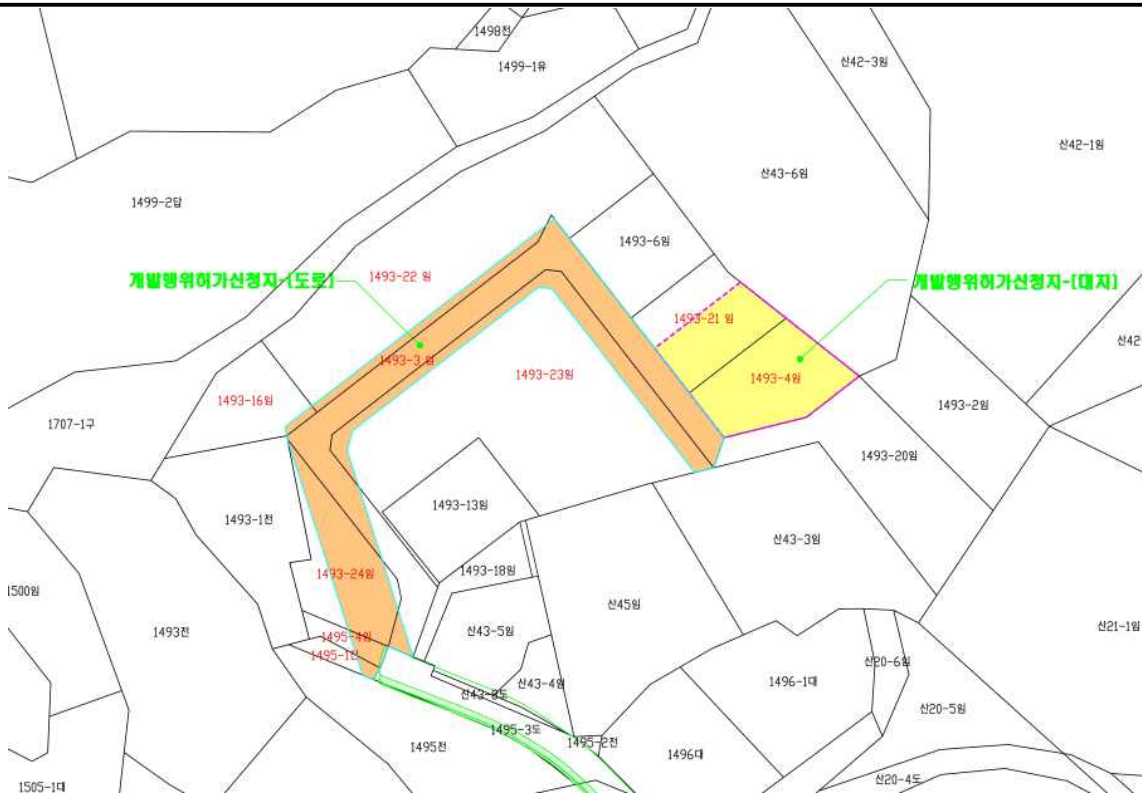
-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.



위치도

축척

NONE



현황도

축척

NONE

속초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속초시 지명위원회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」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4월 18일

속 초 시 장

1. 자치법규명 : 속초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제정이유

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8조의 2(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)의 신설(2023. 6. 11.)에 따라 속초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반영해 정비하여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위원회 구성 기준을 7인에서 10인(위촉위원 6인 이내)으로 변경(안 제2조)
- 나. 서면심의 조항 신설(안 제4조)
- 다. 위원 해촉에 관한 조항 신설(안 제5조)
- 라. 위원회 기능 중 지명의 조정을 지명의 폐지로 일부 기능 수정(안 제6조)

4. 자치법규안 : 붙임

5. 의견제출

가.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. 5. 8.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(참조 : 민원토지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(찬·반대 여부와 그 사유)
- 의견제출자의 성명 (법인·단체의 경우 법인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나.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

- 주소 : 우)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/ 속초시청 민원토지과 (공간정보TF팀)
- 연락처 : 033-639-2248 (FAX 033-639-2385)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FAX, 직접방문 등

6. 기타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민원토지과 공간정보TF팀(033-639-2248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속초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속초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같은 법 시행령 제88조”를 “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위원회”를 “속초시 지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로, “7인”을 “10인”으로, “구성하되”를 “구성하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속초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되고,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소관 부서의 장이 된다.

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위촉한다”를 “위촉하며, 민간위원의 수는 6명 이내로 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당연직: 문화예술 업무 소관 부서의 장, 도로 업무 소관 부서의 장
2. 위촉직

가.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나. 그 밖에 시장이 지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3조제2항 중 “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”를 “당연직 위원 중 직제상 우선 순위의 위원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예정일 7일전까지 당해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.

④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전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회서 회신과 서면심의회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임기)”를 “(임기 및 해촉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

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
제6조제1호 중 “조정”을 “폐지”로 한다.

제8조 중 “전문가에게”를 “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여”로, “요구할 수 있다”를 “요구할 수 있고,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9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「속초시각중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의”를 “「속초시각중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가”로, “수당”을 “예산의 범위에서 수당”으로 한다.

제11조 중 “도지명위원회에”를 “강원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에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(연임을 포함한다)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속초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속초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」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4년 4월 19일

속 초 시 장

1. 자치법규명 : 속초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개정이유

남북교류협력기금 존속기한('23. 12. 31.) 만료로 실효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을 재신설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기금 적립액 및 존속기한 설정 (안 제3조)

나. 기금 관련 조례 정비 (안 제4조~제6조, 제7조제1항·2항, 제8조제1호, 제16조)

4. 자치법규안 : 붙임

5. 의견제출

가.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(참조: 기획예산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1)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2) 의견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법인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 등

나. 의견제출 및 문의처

- 1) 주소 : 우)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, 속초시청 기획예산과(특별자치도추진팀)
- 2) 연락처 : 전화 033-639-2118, FAX 033-639-2106
- 3) 전자문서 : shin3145@korea.kr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FAX, 전자문서, 직접방문 등

6. 기타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기획예산과 특별자치도추진팀 (033-639-2118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속초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속초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기금의 설치 등) 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 증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속초시남북교류협력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한다.

② 기금은 매년 2억 원 이상 적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시의 출연금
2. 기금의 운용 수익금
3. 그 밖의 수입금

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4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.

1. 시민(법인·단체를 포함한다)의 인도적 지원사업과 남북교류협력 사업 및 평화통일의식 증진지원 사업
2. 국가의 남북교류협력사업·경제협력 및 평화통일사업 등과 관련한 시 자체사업
3. 시 자체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 증진사업
4. 기금의 조성·관리 및 운용을 위한 경비
5. 그 밖에 기금의 목적과 부합하는 사업

제5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기금 중 운용자금은 직접 관리하고 여유

자금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치·예탁하여야 한다.

- ②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3조의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등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7조에 따른 속초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6조(회계공무원)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.

1. 기금운용관 : 남북교류업무 담당부서장
2. 기금출납원 : 남북교류업무 팀장

-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·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고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

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기금의 관리·운용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,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시장의 자문을 위하여 속초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,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

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6조(준용)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 관리는 본 조례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「속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기금의 설치 등) 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 증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속초시남북교류협력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한다.	제3조(기금의 설치 등) 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 증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속초시남북교류협력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한다.
② 기금 조성 금액은 50억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	② 기금은 매년 2억 원 이상 적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1. 시의 출연금	1. 시의 출연금
2. 기금의 운용 수익금	2. 기금의 운용 수익금
3. 그 밖의 수입금	3. 그 밖의 수입금
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	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4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.	제4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.
1. 시민(법인·단체를 포함한 다)의 인도적 지원사업과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평화통일의식 증진지원 사업	1. 시민(법인·단체를 포함한 다)의 인도적 지원사업과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평화통일의식 증진지원 사업
2. 국가의 남북교류협력사업·경제협력 및 평화통일사업 등과	2. 국가의 남북교류협력사업·경제협력 및 평화통일사업 등과

<u>관련한 시 자체사업</u> <u>3. 시 자체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 증진사업</u> <u>4. 기금의 조성·관리 및 운용을 위한 경비</u> <u>5. 그 밖에 기금의 목적과 부합하는 사업</u> <u>제5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기금 중 운용자금은 직접 관리하고 여유자금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치·예탁하여야 한다.</u> <u>②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3조의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등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7조에 따른 속초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</u> <u>제6조(회계공무원)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.</u> <u>1. 기금운용관 : 남북교류업무담당부서장</u> <u>2. 기금출납원 : 남북교류업무팀장</u> <u>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</u>	<u>관련한 시 자체사업</u> <u>3. 시 자체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 증진사업</u> <u>4. 기금의 조성·관리 및 운용을 위한 경비</u> <u>5. 그 밖에 기금의 목적과 부합하는 사업</u> <u>제5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기금 중 운용자금은 직접 관리하고 여유자금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치·예탁하여야 한다.</u> <u>②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3조의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등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7조에 따른 속초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</u> <u>제6조(회계공무원)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.</u> <u>1. 기금운용관 : 남북교류업무담당부서장</u> <u>2. 기금출납원 : 남북교류업무팀장</u> <u>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</u>
---	---

계 관리·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고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

제7조(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 기금의 관리·운용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,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시장의 자문을 위하여 속초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,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8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

제16조(준용)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 관리는 본 조례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「속초시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

계 관리·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고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

제7조(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 기금의 관리·운용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,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시장의 자문을 위하여 속초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,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8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

제16조(준용)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 관리는 본 조례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「속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을 준용한다.